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전자투표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 다.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 마. 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 바.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 사.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 아.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 자.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 차.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 카.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 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 파.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예정
3) 행정규제 : 협의예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협의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는 법 제105조 제1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협의개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의 개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였음에도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법 제105조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 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0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과 법 제105조의2 제3항 각호에 따른 재허가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4(권리행사 요건 및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이 법 제10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용허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영리 목적의 이용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및 그 변경내역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이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투표에 관한 업무를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라 동일 등급의 회원만을 대리인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은 제외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 안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5호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총회에서 회원들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제1항의 “법 제106조제7항”을 “법 제10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법 제106조제7항제2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2호”로 하고, “임원보수 등”을 “임원보수 및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법 제106조제7항제3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법 제106조제7항제5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5호”로 한다.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4(전문경영인 기준규모) 법 제106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는 직전년도의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같은 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 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5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5(전자총회 개최 규모) 법 제106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제5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6(회원 등급제의 운영원칙)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른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급 승격에 필요한 객관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은 가입기간, 사용료 수령액 등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등급 승격 인원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이 승격을 신청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1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① 저작권신탁업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법 제106조의3제3항의 전자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회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6조의3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총회에 참석한 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다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전자총회를 개최할 것

가. 전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에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전자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전자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총회에 참석한 회원과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3항에 따라 전자총회를 개최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

1. 전자총회의 개최 여부

2.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관리의 기준 등)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르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사 및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임원

제51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06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보상금 취득 내역은 선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1년간의 내역으로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다른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제53조의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으로 하고, 제2호 다목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기준
라. 법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6의2 호	1개월
마.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6의3 호	1개월
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5호	3개월

<u>사. 법 제106조제8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u>	법 제109조 제1항제6호	<u>1개월</u>
<u>아.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u>	법 제109조 제1항제3호	<u>1개월</u>
<u>자.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u>	법 제109조 제1항제4호	<u>3개월</u>
<u>차. 법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u>	법 제109조 제1항제7호	<u>3개월</u>
<u>카. 법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u>	법 제109조 제1항제7의2호	<u>3개월</u>
<u>타.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u>	법 제109조 제1항제8호	<u>3개월</u>
<u>파.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u>	법 제109조 제1항제10호	<u>3개월</u>

별표 3 제3호의 “1만8천분의 1”을 “6천분의 1”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라목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라. 법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의2	300	500	700
마.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의2	300	500	700
바.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사. 법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의2	100	300	500
아.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100	300	500
자.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300	500	700
차. 법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500	700	1,000
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u>타.</u>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300	500	700
<u>파.</u>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500	700	1,0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7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9조의2(협의절차) ① 저작권신탁 관리업자 또는 이용자는 법 제105조 제1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협의개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른 협의의 개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였음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법 제105조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u> <u>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u>

<신 설>

<신 설>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의 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법 제105조의2 제3항 각호에 따른 재허가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4(권리행사 요건 및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이 법 제10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용허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영리 목적의 이용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및 그 변경내역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
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
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회원이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
투표에 관한 업무를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라 동일 등급의 회원만을 대리인
(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은 제외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대리
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안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
조의4제5호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
되는 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총회
에서 회원들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① -----
-----법 제106조제8항

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
해야 한다.

1. ~ 2. (생략)

② 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③ 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
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
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
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6조제8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및 수당 등 -----
-----.

1. ~ 6.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6조제8항제3호-----

-----.

④ 법 제106조제8항제5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51조의4(전문경영인 기준규모)
법 제106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는 직전년도의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같은 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 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를 말한다. 다만,

<신 설>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신 설>

제51조의5(전자총회 개최 규모)
법 제106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제51조의6(회원 등급제의 운영원칙)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106
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급 승격에 필요한
객관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은 가입기간,
사용료 수령액 등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등급
승격 인원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이 승격을 신청
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① 저작권신탁업자는 정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법 제106조의3제3항의 전자총회
(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
하여 회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6조의3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총회에 참석한 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전자총회를 개최할 것

가. 전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전자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

<신 설>

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전자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총회에 참석한 회원과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3항에 따라 전자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전자총회의 개최 여부

2.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관리의 기준 및 대상 임원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사
및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임원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06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보상금 취득 내역은
선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1년간의
내역으로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u>업무정지</u>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u>다른 재산등록 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수 있다.</u> <u>②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재산등록의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u> 제53조(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 -----<u>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82